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1가단12142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이선영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일

변 론 종 결 2022. 7. 19.

판 결 선 고 2022. 9. 27.

주 문

1. 피고와 C,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9 지분에 관하여 2018. 12.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8,601,15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601,1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유한회사가 C, D(이하 통칭할 때에는 'C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확정지급명령부 채권(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4. 1. 28.자 2003차30785 지급명령)을 주식회사 F을 거쳐 전전 양수한 후 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 21.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91,301원 및 그 중 3,269,680원에 대하여 2003. 10. 2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2014차1311),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C 등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8. 12. 16.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와 딸 H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C 등의 상속지분은 각 2/9이고,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망인이 2007. 8. 25.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다.

다. 후술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17.자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6,500만 원), 2015. 6. 30.자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I,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1,200만 원), 2016. 3. 9.자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I,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1,200만 원)가 각 경료되어 있었다. 위 2015. 6. 30.자 및 2016. 3. 9.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한 피담보채무액 각 1,000만 원은 망인이 I으로부터 대출받아 그 무렵 C에게 지급한 것이다.

라.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 등은 2019. 11. 27. 무렵1) 피고 및 H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상속지분인 각 2/9 지분을 포기하고 위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9 지분을 상속한 C 등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들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위 각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 등은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등 참조).

3) 한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설령 2015. 6. 30.자 및 2016. 3. 9.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한 피담보채무액 각 1,000만 원을 C이 지급받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C의

특별수익분(증여)에 관한 주장으로 보고 살피더라도, C의 구체적 상속분은 31,111,111원[= {2억 3,000만 원(이 사건 부동산 가액 2억 1,000만 원 + 특별수익분 2,000만 원) × 상속지분 2/9} - 2,000만 원]이 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의 결과가 C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4) 나아가 피고는 C 등이나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C 등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수익자인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 등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역시 C 등의 모친으로서 C 등의 채무초과상태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달리 피고가 선의인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결국 피고와 C 등 사이에 각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4.자 근저당권과 2020. 1. 6.자 근저당권, 2020. 3. 11.자 근저당권, 2021. 1. 14.자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고 이에 관하여 질권이 설정되었다가 2021. 1. 14.자 근저당권을 제외한 나머지 근저당권에 관한 설정등기가 각 만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의 원상회복 방법은 가액배상에 의함이 상당하다.

라.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1)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책임재산) 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지고,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공동담보 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로 추인되는 2억 1,000만 원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설정된 1의 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인 8,900만 원을 공제한 1억 2,100만 원의 4/9 지분에 해당하는 53,777,777원(= 1억 2,100만 원 × 4/9, 원 미만 버림)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변론종결일인 2022. 7. 19.까지의 피보전채권액 합계 18,601,154원(2020. 12. 31. 기준 원리금 합계액 18,314,686원 + 원금 3,269,680원에 대한 2021. 1. 1.부터 2022. 7. 19.까지 원고가 주장하는 연 5.66%의 약정지연손해금 286,468원²⁾, 갑 제4호증 참조)이 위 공동담보 가액보다 적은 금액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분할협의를 위 18,601,15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8,601,1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김종신

별 지 목 록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1층 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4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지1층 187.54㎡

1층 164.76㎡

2층 164.76㎡

3층 164.76㎡

4층 151.8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 34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74.82㎡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344분의 43.947

- 1) 주문 기재 상속재산분할협의 체결일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2018. 12. 16.'로 특정한다.
- 2) 286,468원 = 3,269,680원 × (1 + 200일/365일) × 5.66%(원 미만 버림)